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다208890 양수금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9681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6. 2. 3. 대한주택공사(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과주운정1단계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으로 수급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내용에 포함되는 공사계약특수조건[1] 제3조 제1항은 "계약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피고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는 "공동도급계약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당시 시행되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2200, 04-136-11, 04. 8. 16.) 제11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은 2009. 9. 1. 부도 처리되었는데 당시 피고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888,296,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던 사실, ④ 원고는 2009. 9. 2. 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이 통지인으로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와 이 공동수급자의 지위를 탈퇴하고 출자비율(20%)에 따른 지공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발송하여 2009. 9. 3. 피



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원고가 채권양도인인 의 적법한 수권 또는 위임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 양도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채권양도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에 따른 피고의 서면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는 ' 이 이 사건 채권을 원 고에게 양도하였음을 민법 제450조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이 통지인이고 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이 사건 채권 양도인인 의 채권양도 통지의사가 명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서뿐 아니라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 할 때 공동수급자의 지위를 자진하여 탈퇴한다는 의 포기각서도 함께 피고에게 발송한 점 등 그 채권양도통지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은 공동수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채권양도통지의 권한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 및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기성대가 등의 공사대



금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토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와
 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에게 단독으로 귀속되는 점(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도로 인하여 공
 동수급자의 지위를 탈퇴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위를 벗어나면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
 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에 따라
 피고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피고의 서면승인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는 그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채권양도통지의 대리 혹은 채권양
 도통지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따라서 채권양도통지에 관하여 원심이 석평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김 용 덕



2015-0045587857-0C226

무변조방지용 바코드입니다.



대법관

이인복

이 인 복



대법관

고영한

고 영 한



주 심

대법관

김소영

김 소 영





정본입니다.

2015. 3. 12.

대법원

법원사무관 변건우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